

규범적 법미래학의 가능성*

김 주 현** · 김 현 철***

< 목 차 >

- I. 법과 미래
- II. 두 가지 법미래학
- III. 기존 법미래학에 대한 검토
- IV. 규범적 법미래학
- V. 나가며

I. 법과 미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것은 법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법은 세상의 흐름에 잘 조응해야 좋은 법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적인 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변화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어야 한다. 현대 사회의 법도 그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틀을 형성해 왔다. 특히 서구 역사에서 흔히 근대성(modernity)으로 표현되는 특성이 발생하고 성숙하고 지속할 때, 서구의 법도 그에 조응한 규범 체계를 갖추었다. 이를 흔히 “근대법 체제”라고 부른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근본적으로는 이 근대법 체제에 터잡은 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근대 이성법 체제는 근대적 시대환경에 조응한 근대적 세계관, 즉 인간, 자연, 세계에 대한 특정한 이해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이해를 바탕으로 기본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3040329).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연구소 연구교수(주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교신저자).

개념을 형성하거나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으로 구조적 체계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근대와 시대환경이 매우 다르며, 과거 어느 때보다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는 시대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특히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담론으로 표현되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진행되는 사회 구조와 생활의 변화는 현대 사회를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형태를 가진 것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의미에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등으로 표현되는 현대 사회는 이전의 근대적 특성을 벗어난 탈근대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어진 현실로 다가온 탈근대사회에서 사회 구조와 인간 행위를 규율하는 법규범은 아직 근대 서구에서 확립된 이른바 근대 이성법 체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최근 학계에서는 이렇게 현실의 변화를 포착하지 못하는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의 법인격, 빅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 지능형 로봇의 행위 책임, 자율 주행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규제 등 다양한 쟁점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쟁점에 대한 연구는 법이론적으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연구들이 제기하는 대안들은 대부분 현행 근대 이성법 체계의 토대가 되는 개념과 원리들을 새로운 현실에 맞추어 수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많은 관련 법학 연구들이 인격(person), 권리, 책임 등의 근대 이성법 개념을 전제하고 이를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에게 부여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또 헌법, 주권, 국민국가 등 근대적 정치 제도적 개념들을 여전히 전제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려는 작업도 있다. 하지만 이런 근대 이성법 체계를 전제로 한 ‘수정주의’가 탈근대사회라는 새로운 현실에 적합한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근대 이성법은 근대 사회라는 주어진 현실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법규범 체계를 제대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 시대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근대 이성법 체계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근대 이성법 체계의 핵심 개념과 원리를 탈근대사회라는 현실에 비추어 다시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토대로 하여 탈근대사회 법규범 체계의 핵심 개념과 원리를 재구성하거나 새롭게 형성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과거 ‘법철학적 범미래학’이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법평가학적 관점에서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법에 대한 법철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사회는 정보화 사회, 과학기술 사회, 다문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 등으로 표현되는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가치들, 예를 들어 인간 중심의 가치, 남성 중심의 가치, 국가(nation) 중심의 가치들도 변화하고 있다. 법철학의 가치론적 과제는 일반적 주제로서 정의 등 법적 가치 개념 그 자체를 연구하겠지만, 구체적 주제로서 법적 가치의 현실적 변용이라는 문제에도 응답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중략) 이는 현실을 경험적으로 포착하는 법사회학과는 달리, 현실을 재료로 하되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좋은 법’을 성찰적으로 탐구하는 작업이고 동시에 현실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법철학적 상상력’을 구현하는 작업이라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굳이 이 분야를 명명하자면, “(법철학적) 범미래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¹⁾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근대 이성법 체계와 그 핵심 원리 및 개념을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하고 미래 사회를 위한 범규범 체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범미래학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의 범미래학 논의의 흐름을 검토하면서, 이와 차별되는 보다 규범적이고 실천적인 범미래학의 모습을 포착해보고자 한다.

II. 두 가지 범미래학

범미래학(legal futurology, legal futures studies)²⁾은 완전히 새로운 학문 분야는 아니다. 아직 정립되지 않고 형성 중이기는 하지만, 이미 그 개념과 아이디어는 제시되어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범미래학 논의는 대체로 크게 두

1) 김현철, “법철학의 주제 설정”, 『법철학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법철학회, 2019, 22면.

2) 범미래학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legal futurology와 legal futures studies가 사용되고 있다. legal futurology는 미래학(futurology)과 법학의 융합적 관점에서 사용되며, 법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미래 사회의 법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legal futures studies는 구체적인 학문 연구 분야를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된다. 이러한 용어들은 모두 법과 미래의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적 접근을 지칭하며, 공통적으로 현재의 법체계와 미래 사회의 복잡성을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가지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³⁾ 첫째는, 미래의 법(Law of Future)에 대한 접근이다. 이 접근은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향후 미래 사회의 변화가 법과 법체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분석한다. 둘째는, 법의 미래(Future of Law)를 예측하려는 접근으로, 현재의 법과 법체계가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미래학 방법론을 통해 예측하려고 한다. 즉, 전자는 미래사회에 대한 미래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미래 사회의 한 요소인 법과 법체계를 살펴보는 것이고, 후자는 미래에 있을 현행법의 변화를 주요 관심사로 두고 이 변화를 미래학 방법론을 통해 포착하고자 한다. 다만, 이 두 접근법은 현재로서 이론적으로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연구들에서도 두 접근법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이는 범미래학 자체가 확립된 학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런 분류는 의미가 있는데, 범미래학을 바라보는 관심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 미래의 법(Law of Future)

이 접근법은 미래 사회에 법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또는 작동하기 위해 어떤 이론이 필요한지를 탐구한다. 현재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기후 위기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관점에서는 주로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을 미래학적 방법론으로 탐구하고, 나아가 이 변화와 발전이 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법과 법체계가 미래에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화할 수 있지를 모색하는 작업이며⁴⁾, 주로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미래의 법(Law of Future)’ 접근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공학과 같은 첨단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기존 법체계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도전 과제들은

3) 두 가지 접근에 대한 구상은 *The Law of the Future and the Future of Law*(2011)의 분류를 활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이 문헌에서는 ‘미래의 법’의 주제를 글로벌 국제 시스템과 세계 헌법 프레임워크, 국가 제도의 변화로 보았고, ‘법의 미래’의 주제를 법적 사고와 법이론에 대한 성찰, 법체계의 다양화와 융합,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법적 도전 과제, 국제 형사사법제도도 보았다. Sam Muller, Stavros Zouridis, Morly Frishman and Laura Kistemaker (eds.), *The Law of the Future and the Future of Law*, FICHL Publication Series No. 11, 2011.

4) *Ibid.*, pp.5-6.

현재의 법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며, 새로운 기술이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⁵⁾ 이를테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법적 책임의 주체로서 ‘법인격(legal personhood)’ 개념을 다시 정의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적, 사회적 문제들은 환경법과 국제법에서 협력과 책임의 한계를 드러낸다.

여기서 미래를 탐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미래에 나타날 사회적 변화, 기술 혁신, 환경적 위기,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를 포착하고 이를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에 나타날 사회적 변화는 사회, 경제, 과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변화가 현존하는 법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단지 실무적 관점에서만 중요하지 않으며, 법이론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발전해야 한다.

이는 사회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법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비롯되며, 그 근간은 전통법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과거에도 새로운 기술의 등장, 급격한 사회 변화, 정부의 정책 변화 등은 항상 법적 대응을 요구하였다. 특히 산업혁명과 인터넷의 등장은 오늘날의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등장과 매우 유사한 측면을 보였다. 이러한 새로운 요구에 따라 법 개정 방향이 제시되고,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법이론이 도출되기도 했다. 즉, 이러한 분석과 탐구는 미래 사회가 직면할 도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적합한 법이나 이론을 설계하려는 노력을 포함한다.

2. 법의 미래(Future of Law)

법의 미래(Future of Law) 접근은 범미래학을 법에 대한 예보(forecasting)로 보는 관점을 의미한다. 이 접근은 법이 생성되는 메커니즘을 분석함으로써 미래에 어떤 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를 예측하고 탐구한다. 예보적 접근은 현행 법령과 관례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새로운 기술적 혁신과 결합하여 법의 미래 모습을 전망한다. 즉, 특정 맥락에서 어떤 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어떤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예측한다. 이는

5) Ibid., p.23.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해 법과 그 적용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예측하려는 접근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예보적 접근은 선례를 바탕으로 확률적 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예측 도구를 개발한다.⁶⁾ 최근 수십년 간 데이터 수집과 저장 기술이 확장되고, 계산 능력이 급격히 향상되면서 이 분야가 크게 발전하였다. 예를 들어, 법령과 판례 등을 수집한 뒤,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면 특정 사건의 법적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슈퍼컴퓨터를 통해 날씨를 예보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특히 사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복잡성이 높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기술은 효율적인 법적 판단을 지원하는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⁷⁾ 이러한 지원 도구는 수백만 건의 분쟁 사건을 자동화 처리함으로써 법적 결정 과정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어찌먼 하드 케이스(hard cases)나 선례가 없는 사건에 대해 ‘법 예보(legal forecasting)’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미 많은 리걸 테크(Legal Tech) 기업들은 법률 문서 분석, 소송 결과 예측, 법률 자문 자동화 등의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예보적 접근의 중요성은 인공지능 판사와 같은 개념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인공지능 판사는 단순히 기존 법률과 판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알고리즘과 예측 모델을 활용해 인간보다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또한, 이렇게 축적된 법적 데이터는 미래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는 복잡한 국제 분쟁, 환경 문제, 기술 특허 등 고도의 전문성과 예측 가능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3. 두 가지 범미래학의 교차: 시나리오 기법

미래학은 다양한 예측 및 통찰 방법론을 활용하며, 이는 데이터 분석과 구조화된 프로세스를 이용한다.⁸⁾ 미래학의 기술적 방법론 중 하나인 시나리오 기법

6) Heike Paul (ed), *Critical Terms in Futures Studies*, Palgrave Macmillan, 2019, p.129.

7) Kevin D. Ashle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egal Analytics: New Tools for Law Practice in the Digital 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Richard Susskind, *Online Courts and the Future of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8) 미래학의 기술적 방법론에는 직관적 접근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프로세스와 통합적 관점을

(scenario planning)⁹⁾은 군사적 목적의 활용을 시작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 기업 경영 영역에서 확장되었다. 이 기법은 법의 미래를 예측하는 실질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데, “현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아닌 분석도구”이며, 단순한 “예측(predictions)이 아닌 가정(what ifs)”으로 알려져 있다.¹⁰⁾ 시나리오 기법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미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 경로를 탐구하는 방법론이다. 이러한 방법론은 사회의 트렌드와 환경적 요인을 분석해 여러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통해 정책 결정과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시나리오 기법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책 입안자와 의사결정자가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법학 분야에도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입법자, 정부 기관, 법원, 로펌, NGO 등이 법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가 대표적이다.¹¹⁾ 시나리오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X축과 Y축을 만들어 4분면으로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¹²⁾ 법 시나리오의 경우에 X축을 법의 국제

강조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프레임워크 포어사이트(Framework Foresight), 예측 시장(Prediction Markets), 인과적 계층 분석(Causal Layered Analysis, CLA), 환경 스캐닝(Environmental Scanning), 호라이즌 스캐닝(Horizon Scanning), 시나리오 방법(Scenario Method), 교육 및 학습(Education and Learning),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과 이를 실시간으로 활용한 실시간 델파이(Real-time Delphi), 미래 역사(Future History), 모니터링(Monitoring), 백캐스팅(Backcasting, eco-history), 교차 영향 분석(Cross-impact Analysis), 미래 워크숍(Futures Workshops), 세 가지 지평선(Three Horizons, 3H), 좋은 인류세의 씨앗(Seeds of Good Anthropocenes), 예측적 행동 학습(Anticipatory Action Learning), 예측 분석(Predictive Analytics), 고장 모드 및 영향 분석(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 미래의 바퀴(Futures Wheel), 기술 로드맵 작성(Technology Roadmapping),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시스템 공학(Systems Engineering), 트렌드 분석(Trend Analysis), 형태 분석(Morphological Analysis), 기술 예측(Technology Forecasting), 그리고 이론 U(Theory U) 등이 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Futures_studies.

- 9) 시나리오 기법은 scenario thinking, scenario analysis, scenario prediction, scenario method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 10) Hill innovating justice, *Law Scenarios to 2030*, Hague Institute for Innovation of Law, 2012, file:///C:/Users/merbl/Downloads/Law-scenarios-to-2030.pdf, p.12.
- 11) Ibid., p13. 이 보고서는 2012년에 2030년을 위한 법적 전략(Law Scenarios to 2030)을 제안하였으며, 법의 국제화 과정과 법체계의 성격 변화를 시나리오로 나눈 것이다. 법 시나리오 2030은 “법이 단순히 사후 대응적인 힘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상상하고, 개념화하고, 토론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밝히며, 글로벌 법적 환경의 변화와 민간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확장을 미래의 법적 트렌드로 분석하고 있다.
- 12) 박성원, 「미래공부」, *글로벌*, 2020, 177-178면. 하와이 미래학연구소는 오랫동안 계속성장, 붕괴, 보존, 변형이라는 네 가지 틀로 시나리오를 엮어 미래를 예측하였다.

화 과정으로, Y축을 법체계의 성격 변화로 설정한 연구가 있다.¹³⁾ 이러한 형태 외에도 기술 발전이 법제도에 미칠 영향을 시나리오로 예측하며 법과 코드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거나,¹⁴⁾ 국제법의 진화와 새로운 갈등 해결 모델의 도출에 중점을 둔 연구도 있다. 특히, 국제 분쟁 해결에서 다가올 정치적 및 기술적 상황을 반영한 법적 시나리오 기법이 도입되었다.¹⁵⁾ 또한, 헌법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헌법 변화나 새로운 기본권 도입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¹⁶⁾ 이처럼 시나리오 기법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는 방법으로, 법학 분야에서도 이 방법론이 발전하였다.

Ⅲ. 기존 범미래학에 대한 검토

그렇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범미래학의 의의와 한계는 무엇일까? 먼저, 미래의 법 접근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통 법학의 틀 안에서 미래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 소재 문제, 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지구적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 체제와 관련된 논의는 모두 근대 이성법 체제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의 법적 책임 소재에 관한 논의는 대개 현행 형법과 민법의 틀 안에서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인 입법안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은 현행법과 법체계가 미래의 도전에 직면하여 유연성과 적응력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며, 기존 법체계 안에서 입법적 개선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학적 논의는 기존 법학에서도 꾸준히 이루어져 온 방식으로, 범미래학만의 독자적 차별성을

13) Hill innovating justice, Law Scenarios to 2030, Hague Institute for Innovation of Law, 2012, file:///C:/Users/merbl/Downloads/Law-scenarios-to-2030.pdf, p.13. X축은 법체계가 공적 법률 체계(predominantly public legal regime)와 혼합 또는 사적 법률 체계(mix or private legal regime) 사이에서 어디로 이동할지를 나타내고, Y축을 법률의 국제화가 지속될지 아니면 반대로 후퇴할지를 나타낸다.

14) Lawrence Lessig,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 Basic Books, 1999.

15) Philippe Sands, *Lawless World: America and the Making and Breaking of Global Rules*, Penguin Books, 2005.

16) Bruce Ackerman, *We the People: Foundation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또한, 법의 미래, 즉 법에 대한 예보적 관점은 과학적 예측 도구의 개발과 적용에 논의가 집중된 나머지 규범적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미래 예측의 과학적 방법론은 규범적 기준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인간의 역할을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다.¹⁷⁾

그리고 많은 미래 예측 작업이 특정 도구나 접근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일부 기업과 정부 기관은 시나리오 계획을 미래를 탐구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간주하며, 이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미래 연구를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작업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과적으로 ‘전략적 예지력(strategic foresight)’ 또는 ‘시나리오 계획’의 동의어로 축소시키는 한계를 드러낸다.¹⁸⁾ 즉, 미래 연구가 점차 창의적 탐구의 도구에서 단순한 관리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는 미래 연구의 본질적 목표가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을 탐구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문제 해결과 즉각적인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런 기존 범미래학의 문제는 다시 다음 3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1. 범미래학의 학문적 타당성과 한계

범미래학은 본질적으로 ‘미래’와 형성 중인 미래학(futurology)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만큼, 예측 불가능한 요소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법학 고유의 학문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미래를 탐구하는 접근 자체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에서 비롯된다. 게다가 미래학은 현

17) 스테파니 디크(Stephanie Dick)과 같은 데이터 과학자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기 위해 더 이상 인과 메커니즘, 왜인지(why)를 생각해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Stephanie Dick, “That is not why”(workshop paper). *History of data/Data in history*, Columbia University Center for Science and Society, 2015). 이러한 주장은 규범적 기준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인간의 역할을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으로 Jim Guszczka and Nikhil Maddirala, “Minds and machines: The art of forecasting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loitte Review* vol. 19, 2016. <https://www2.deloitte.com/insights/us/en/deloitte-review/issue-19/artof-forecasting-human-in-the-loop-machine-learning.html> 참조.

18) Sardar Ziauddin, “The Namesake: Futures; futures studies; futurology; futuristic; foresight—What’s in a name?”, *Futures* vol. 42, no. 3, 2010,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01632870900175X>, p.180.

재 학문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예술인지 학문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할 만큼 학문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물론 미래학을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보는 관점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법학은 사회학, 정치학과 같은 전통적 사회과학에 비해 미래 연구와의 융합이 제한적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법학은 그 보수성과 규범적 성격으로 인해 미래학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한편, 미래학을 역사학과 연계해 해석하려는 시도도 존재한다. 이러한 접근은 시간의 연속성에 주목하며, 과거와 현재의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미래를 탐구하려는 점에서 역사적 맥락을 활용한다. 범미래학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발전하려면, 역사학과 미래학 사이의 학문적 연계를 넘어, 법학 고유의 규범성과 해석론을 동시에 통합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법학의 학문적 특성과 연구 방법론의 경직성 때문에,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여전히 많은 도전과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범미래학이 역사적, 규범적, 예측적 관점을 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 범미래학이 직면하는 문제는 법학이 지닌 보수성이다. 법적 사고는 주로 과거의 기록을 해석하거나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위한 행동 지침을 재해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법률 정책 분석과 영향 연구 역시 수십 년 단위의 법률 효과에 초점을 맞추며, 대부분의 관심은 당면한 문제 해결에 집중된다.¹⁹⁾ 물론 일부 학자들은 미래학적 관점에서 법을 연구하지만, 기술이 법률에 미칠 영향 같은 특정한 관점에 국한되거나 특정 법 영역의 미래만을 다룬다. 대체로 법률가들은 최근에 채택된 법이나 판례를 활용하며, 그 법이나 판례가 작동할 것인지 여부를 논쟁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춘다.²⁰⁾ 법학은 대개 안정성과 일관성을 중시하며, 기존의 법적 틀과 관행을 준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특성은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려는 미래학의 접근과 대조적이다. 특히, 법학은 기존의 규범적 체계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미래학은 대안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지

19) David A. Funk, "Legal Futurology: The Field and its Literature", *Law Library Journal* 73, no. 3, 1980, p.625.

20) Hill, *Law Scenarios to 2030: Signposting the legal space of the future*, Hague Institute for Innovation of Law, 2011, https://www.hiil.org/wp-content/uploads/2018/09/HIIL_n18533_v1_Law_Scenarios_to_2030_v1-1.pdf, p.8.

향점을 가진다. 이러한 차이는 범미래학이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도전 과제로 작용한다.

사실 미래학은 다학제적이고 초학문적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학문의 전통적 지위와 틀을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는 점에서 비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단순한 비학문성을 넘어, 완전히 체계화된 비판적 탐구 방식을 통해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특한 담론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도전적이고 급진적인, 일종의 ‘사악한 담론’으로 평가될 수 있다.²¹⁾ 따라서 범미래학은 법학과 미래학 간의 융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학문적 타당성과 통합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학이 지닌 보수적 성격을 완화하면서도 미래학의 창의적인 접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범이론적 틀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범미래학의 도구적 활용에 대한 비판

범미래학이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법적 대안을 탐구하기보다 단순히 ‘관리 도구(management tool)’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²²⁾ 특히 미래학이 국가 정책 결정, 리더십 연구, 전략 수립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음에 따라, 특정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미래학 연구가 법체계의 구조적 혁신보다는 기존 문제를 보완하는 데 그칠 우려가 있다. 나아가, 미래학에서는 “누가 미래에 대한 담론을 주도하는가? 누구의 목소리가 배제되는가?”라는 권력과 정의의 문제가 중요한 논의로 부각되었는데,²³⁾ 권력을 가진 이들이 범미래학의 담론을 주도하게 된다면, 범미래학은 법적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또한, 미래학과 법학 모두 흔히 탐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

21) Sardar Ziauddin, “The Namesake: Futures; futures studies; futurology; futuristic; foresight – What’s in a name?”, *Futures* vol. 42, no. 3, 2010, p.182.

22) ‘관리 도구(management tool)’는 미셸 고데(Michel Godet)가 그의 저서 *Creating Futures: Scenario Planning as Strategic Management Tool*(2001)에서 시나리오 기법이 미래를 창조하고 설계하는 전략적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제안한 개념이다(Michel Godet, *Creating Futures: Scenario Planning as Strategic Management Tool*, Economica, 2001).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시나리오 기법이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법적 대안을 탐구하기보다는 단순히 조직적 효율성과 관리적 필요에 의해 제한적으로 활용될 위험성을 지적하는 의미에서, 다소 부정적인 어감으로 사용된다.

23) Heike Paul (ed), *Critical Terms in Futures Studies*, Palgrave Macmillan, 2019, p.141.

법미래학은 엘리트 중심적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법미래학적 담론에 사회적 참여를 배제하고, 미래 연구와 법적 대안 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 결과, 법미래학이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소수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관리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커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과 공동체가 직접 미래를 탐구하고 설계하는 참여형 미래 연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포어사이트(foresight) 워크숍, 몰입형 미래 경험 등과 같이 미래를 엘리트 전문가가 아닌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²⁴⁾

3. 법의 철학적 기초 약화

법미래학이 미래의 기술과 과학적 접근에 지나치게 치우칠 경우, 법학 고유의 철학적 기초가 약화 될 위험이 있다. 법은 단순히 규칙이나 규범의 집합체가 아니라, 정의, 평등, 인권과 같은 근본적인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법미래학이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목표, 예컨대 기술 기반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할 경우, 법개념과 법이념과 같은 중요한 법철학적 기초가 간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법이 미래 사회에서 규범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적 판단 시스템의 개발은 법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알고리즘에 내재된 편향성으로 인해 정의와 평등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젠더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하거나 기존의 젠더 불평등을 강화하는 사례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윤리적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법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며, 법의 규범적 원칙과 그에 대한 철학적 기초를 재검토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기후법에 대한 논의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기후 정의(climate justice)와 같은 주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불평등하게 피해를 입는 취약한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책임 분배를 논의해야 하지만, 법학에서는 주로 규제와 책임 제도 설계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

24) Ibid., p.142. 골드코스트, 질롱, 브리즈번, 선샤인 코스트 등 호주 전역의 city foresight project가 그 예이다. 국내 미래 워크숍에 대한 설명으로는 박성원, 앞의 책, 63-73면.

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접근은 기후 문제를 단순히 규제적 관점에서 다루며, 정의와 책임이라는 규범적 가치를 간과할 위험을 내포한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기존 범미래학과 구별되는 새로운 범미래학의 모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범미래학 연구는 단순히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예측하는 작업이 아니며, 그 본질은 미래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방식에 국한되지 않는다. 범미래학은 법이 급격한 사회 변화 속도에 뒤처지지 않고, 이러한 변화에 규범적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범미래학은 과학적 접근과 기술적 혁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법이 가진 규범적 본질과 철학적 기초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균형을 찾아야 한다. 이는 법이 미래 사회에서 단순히 기술적 도구로 기능하는 것을 넘어, 정의와 평등과 같은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는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과학적 미래학’이 아닌 ‘규범적 미래학’ 개념의 범주가 새롭게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기존의 범규범이 보호와 규제의 수단으로서 유효성을 유지하도록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존의 법과 체계를 넘어 새로운 법체계와 개념을 제안하는 시도를 통해 법의 개혁을 추구한다.

IV. 규범적 범미래학

새로운 범미래학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범미래학의 주요 관심(main concern)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범미래학이 법의 미래를 제안하고, 미래의 법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그러나 법의 미래를 제안할 때, 현재의 법적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제안한다면 과연 그 제안이 타당한 것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법의 미래는 미래 조건에 적절히 조응하는 법의 모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야 하는데, 근대적 삶의 양식에 맞추어서 발전한 현재 법 패러다임으로 미래 조건을 제대로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법을 예측하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현재 근대법 체계를 패러다임으로 삼고 미래의 법을 예측할 수 있으나, 그 예측 결과가 미래 조건에 적절히 조응하는 좋은 법의 모습을 가질 것이라는 보장을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범미래학의 모색은 근대법 체제에 대한 평가와 비판에 근거해야 하고, 이 근대법 체계와 미래의 탈근대적 조건의 차이에 대한 사려 깊

은 분석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이다.

먼저 근대법 체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근대법 체제는 그 이전과 비교할 때, 우선 개인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근대법 체제에서 상정하고 있는 개인은 ‘자기보존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적 존재이지만 동시에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존재들과 차이를 가진다. 이때 이성은 주지하듯이 선악에 관한 도덕적 판단의 근거인 ‘고대적 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효율적 수단을 계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근대적 이성’을 의미한다. 이런 ‘근대적 이성을 가진 개인’을 핵심 인간관으로 상정하고 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근대법을 따로 “근대 이성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근대 이성법 체제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특정한 이해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이해를 바탕으로 기본 개념을 형성하거나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으로 구조적 체계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근대 이성법 프로젝트는 근대적 삶이라는 사회, 경제적 변화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동시에 근대 이성법은 이 사회, 경제적 변화에 일정한 형식을 부여함으로써 변화를 유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고체화된 상태로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 형식성 때문에, 근대법은 급진적인 새로운 사회, 경제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시대에 대한 진단은 역사를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나, 직관적으로 볼 때 현재 다수의 사람들은 급진적인 새로운 변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의 담론은 이런 사고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급진적 변화의 시기에 법철학자는 어떤 근본 관심을 가져야 하며, 어떤 비판적 질문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필자들은 이에 대해, 탈근대적 조건이 성숙한 미래 세계를 상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근대 이성법 체제가 이 변화 속에서 적절히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둘째,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근대 이성법 체제의 어떤 요인 때문인가?

셋째, 위의 요인은 근대 이성법 체제 내에서 치유 가능한가 아닌가?

넷째, 만일 치유 가능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섯째, 근대 이성법 체제가 아니라면,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여섯째, 나아가 근대 이성법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법 패러다임을 구성할 수 있는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탈근대적 조건이 성숙한 시대에 근대 이성법 체제가 적절히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이는 적절히 기능한다면 다른 물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기존의 법미래학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의미 있는 답을 하기 위해서는 (1) 현시대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2) 근대 이성법 체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때 근대 이성법 체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현재의 맥락에서 근대 이성법 체제의 기본 원리와 개념을 재음미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런 진단과 비판적 분석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 진단과 분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근대 이성법 체제가 적절히 기능하지 못한다는 평가와 그 요인에 대한 분석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안을 근대 이성법 체제의 법 패러다임 내의 수정과 개혁으로 찾을 수 있다면 새로운 법 패러다임을 따로 모색할 필요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치유 가능하지 않다는 평가가 내려진다면, 다음으로는 그 이유를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치유할 수 없는 이유가 확고하다면, 이제는 새로운 법 패러다임의 대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안 모색을 위해서는 다양한 후보군이 검토되고, 후보군의 장단점이 분석되어 그중 가장 적절한 형태의 법 패러다임을 구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비판적 질문의 예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근대 이성법 체제에 의하면, 이성적 개인은 규범 창출의 주체가 된다. 이런 근대적 규범 창출 메커니즘은 ‘계약’이라는 수단을 통해 제시되는데, 계약은 이성적 개인의 경제적 혹은 사회적 숙고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성적 개인은 계약을 통해 경제적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 혹은 시민 상태를 구축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계약에 의해 스스로 의무를 지고, 반대로 권리자가 되기도 한다. 권리 개념은 이런 이성적 개인을 전제하지 않고 생각할 수 없으며, 근대 이성법 체제를 대표하는 새로운 규범 개념이 된다.

이런 근대 이성법 체제를 전제한다면, 첫 번째 비판적 질문을 다음과 같이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1) 근대 이성법 시대에 등장한 권리 개념은 당시의 사회, 경제적 맥락에서

역사적으로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지금도 유효한가?

이 질문은 필연적으로 다음 질문으로 이어진다.

(2) 이는 누가 권리를 가지는가라는 문제로 심화되는데, 근대 이성법은 그것은 인(人, person) 또는 인격(personhood)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에도 권리 주체는 여전히 인 또는 인격이어도 괜찮은가?

이는 근대 이성법의 인(人)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수반할 것이다. 이 검토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어진다.

(3) 근대 이성법에서 인(人)의 전형은 남성과 상인이며, 이 표상은 근대 시민의 기본적 표상이 되고 있다. 현재 공법, 형사법, 민사법의 기본 법리 중에는 이 표상에 근거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표상은 미래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할까?

위 비판적 질문에 대한 답은 다양한 형태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답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꼭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은 당대의 문화와 사유의 함수이며, 근대법도 근대 문화와 사유 특히 인간에 대한 이해의 함수이기 때문이다.

(4) 위의 남성/상인 표상으로서 인(人)은 타인과 계약(교섭)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이성과 자유의지에 관한 인간 이해에 근거하고 있는데, 인간에 대한 이해가 변화한 지금도 이런 이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위 질문들은 다시 다른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위 질문들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 대한 법적 문제를 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는 근대 국가의 탄생과 입헌주의적 헌정질서의 형성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위 질문은 다음과 같이 이어질 수 있다.

(5) 사회계약론은 이런 이성적 인(人)의 무리(즉, 시민 혹은 대중)를 전형으로 받아들이면서 만들어진 이론이며, 그 무리를 국가와 국민의 개념(nation)으

로 재조직하고 그에게 최고의 권력(주권)을 부여한다는 신화의 토대가 된다. 이런 공법(헌법)적 관점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6) 국제 관계도 위 국가/국민(nation) 사이의 관계(inter-nation)를 기반으로 하여 법적으로 포착하고 있는데, 지금도 진행 중인 nation을 넘어선 또는 nation과 교차하는 다양한 세계적(global)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개념적 모색이 필요한가?

마지막으로 근대 이성법 패러다임의 근본 전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근본 전제 중의 하나는 인 중심주의(person centralism) 즉 인간을 중심으로 사고 하는 사고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고의 경향은 미래에도 유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같이 모색된다.

(7) 인 중심주의는 공존의 조건으로 기능하는 법의 기본 가치로 적절한가? 왜냐하면, 인간의 공존(생존)은 동물, 자연, 로봇, 우주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즉, 근대 이성법의 권력 행사를 위한 조건은 이성적 인(人)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공존 가능성을 낮추는 해악(Harm)의 제거에서 정당화를 찾는 데, 해악과 위협의 경계가 불분명한 현대 사회의 조건에서도 이런 전제는 여전히 유효한가?

비판적 질문은 사실 여기에서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터잡아 꼬리를 물고 새로운 비판적 질문이 계속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비판적 질문은 근본적으로 범철학적이며, 특히 범평가적 특성을 가지는 규범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 즉,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과학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는 기존 범미래학의 모색과는 결을 달리하고 있다. 이런 범미래학을 ‘규범적 범미래학’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V. 나가며

미래학자 데토(Jim Dator)의 제1 미래 법칙, 즉 “미래는 예견(predicted)할 수 없지만, 대안적인 미래는 예보(forecasted)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미래는 구상(envisioned)하고 발명(invented)할 수 있다”는 관점에 따르면,²⁵⁾ 범미래학은 기

존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대안을 탐구하며, 그중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구상하여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법이 단순히 변화에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형성하고 이끌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규범적 범미래학의 논의는 단순히 미래에 등장할 법적 문제를 예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과 법체계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과 그 방향성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규범적 범미래학은 법적 담론의 장을 새롭게 구축하는 작업도 수행할 수 있다. 즉, “미래의 궤적에 대한 논의는 현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때 때문에, 담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법의 방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²⁵⁾” 규범적 범미래학은 단순히 미래 사회를 예측하거나 기술적 혁신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현재의 법체계와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범적 방향을 제시하는 학문적 접근이 될 수 있다. 미래 사회의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법이 그 변화에 대응하거나 나아가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담론의 장을 형성하는 것은 범미래학의 핵심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급격한 기술 발전과 사회적 변화로 인해 과거의 법체계와 원리가 더 이상 새로운 현실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법학의 전통적 개념과 이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과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글은 범미래학이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는 학문적 시도를 주장하며, 그 가능성과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범미래학은 아직 학문적 초기에 있으며, 미래학의 불확실성과 법학의 보수성이라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범미래학은 단순히 현재의 법체계를 보완하거나 판결을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의 철학적 기초를 강화하고, 새로운 법의 패러다임을 제공하여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적 틀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근대 법학의 전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새로운 법적 개념과 원리를 형성하는 동시에, 법이념과 규범적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런 새로운 범미래학을 모색하며 규범적 법

25) Jim Dator, “Foreword”, in Richard A. Slaughter (ed.), *The Knowledge Base of Futures Studies*, 3 vols., DDM Media Group, 1996, Sardar Ziauddin, “The Namesake: Futures: futures studies; futurology; futuristic; foresight – What’s in a name?”, *Futures* vol. 42, no. 3, 2010, p.178에서 재인용.

26) Sam Muller, Stavros Zouridis, Morly Frishman and Laura Kistemaker (eds.), *The Law of the Future and the Future of Law*, FICHL Publication Series No. 11, 2011, p.38.

미래학을 제안하였다.

규범적 범미래학 구상은 단순한 과학기술적 대응을 넘어 법의 본성에 대한 근본적이고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며, 미래 사회에서 법이 추구해야 할 이념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체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규범적 학문의 이상을 추구한다. 규범적 범미래학은 이런 측면에서 법평가학의 일부로서 법철학 이론이며, 법철학적 범미래학으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 2024.12.9. / 심사완료일 : 2024.12.20. / 게재확정일 : 2024.12.23.

[참고문헌]

- 김현철, “법철학의 주제 설정”, 『법철학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법철학회, 2019.
- 박성원, 『미래공부』, 글항아리, 2020.
- Ackerman, Bruce, *We the People: Foundation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 Ashley, Kevin 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egal Analytics: New Tools for Law Practice in the Digital 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 Dator, Jim, “Foreword”, in: R. A. Slaughter (ed.), *The Knowledge Base of Futures Studies*, 3 vols., DDM Media Group, 1996.
- Dick, Stephanie, “That is not why” (workshop paper), History of data/Data in 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Center for Science and Society, 2015.
- Funk, David A., “Legal Futurology: The Field and its Literature”, *Law Library Journal*, vol. 73, no. 3, 1980.
- Godet, Michel, *Creating Futures: Scenario Planning as Strategic Management Tool*, Economica, 2001.
- Guszcza, Jim and Maddirala, Nikhil, “Minds and Machines: The Art of Forecasting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loitte Review, vol. 19, 2016. <https://www2.deloitte.com/insights/us/en/deloitte-review/issue-19/artof-forecasting-human-in-the-loop-machine-learning.html>.
- Hill, Law Scenarios to 2030: Signposting the legal space of the future, Hague Institute for Innovation of Law, 2011, https://www.hiil.org/wp-content/uploads/2018/09/HIIL_n18533_v1_Law_Scenarios_to_2030_v1-1.pdf.
- Hill innovating justice, Law Scenarios to 2030, Hague Institute for Innovation of Law, 2012, file:///C:/Users/merbl/Downloads/Law-scenarios-to-2030.pdf.
- Lessig, Lawrence,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 Basic Books, 1999.
- Muller, Sam, Zouridis, Stavros, Frishman, Morly, and Kistemaker, Laura (eds.), *The Law of the Future and the Future of Law*, FICHL Publication Series No. 11, 2011.
- Paul, Heike (ed.), *Critical Terms in Futures Studies*, Palgrave Macmillan, 2019.
- Sands, P., *Lawless World: America and the Making and Breaking of Global*

Rules, Penguin Books, 2005.

Ziauddin, Sardar, “The Namesake: Futures; futures studies; futurology; futuristic; foresight—What’s in a name?” *Futures*, vol. 42, no. 3, 2010.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01632870900175X>.

Susskind, Richard, *Online Courts and the Future of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국문초록]

규범적 범미래학의 가능성

김 주 현* · 김 현 철**

현대사회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사회적 변화로 인해 기존의 법체계와 원리가 더 이상 새로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법학의 전통 개념과 이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과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범미래학의 가능성과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범미래학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이지만, ‘미래의 법’과 ‘법의 미래’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뉜다. 전자는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기후 변화 등 급격한 사회 변화를 분석하며 새로운 법체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후자는 최신 기술과 미래학의 기술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법을 과학적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이러한 범미래학의 접근은 여전히 전통 법학의 틀 안에서 제한된 논의에 머물거나, 과학적 방법론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기술적 도구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다. 기존 법학에 의존하는 방식은 범미래학의 독자적 차별성을 약화시키며, 기술 중심적 접근은 정의와 평등 같은 법의 규범적 가치를 간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대 법학의 전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법적 개념과 원리를 형성하는 동시에, 법이념과 규범적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한 접근을 규범적 범미래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규범적 범미래학은 단순한 과학기술적 대응을 넘어 법의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미래 사회에서 법이 추구해야 할 이념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체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규범적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규범적 범미래학은 이런 측면에서 일종의 법철학 이론이며, 법철학적 범미래학으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미래학, 범미래학, 법의 미래, 미래의 법, 규범적 법학, 규범적 범미래학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연구소 연구교수(주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교신저자).

[Abstract]

The Possibility of Normative Legal Futurology

Kim Joohyun* · Kim Hyeon Cheol**

Modern society, characterized by rapid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social changes, faces a situation where traditional legal frameworks and principles no longer align with emerging realities. These transformations demand new approaches and paradigm shifts that go beyond the traditional concepts and ideologies of jurisprudence. This paper explores the potential and necessity of legal futurology in response to such demands. Although discussions on legal futurology remain limited, they can be categorized into two perspectives: the "Law of Future" and the "Future of Law". The former analyzes rapid societal changes such as digital transform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limate change, emphasizing the need for new legal systems, while the latter employs cutting-edge technology and futurological methodologies to scientifically predict legal developments. However, current approaches to legal futurology are constrained within the framework of traditional jurisprudence or overly reliant on scientific methodologies, risking a reduction of law to a mere technical tool. Approaches dependent on traditional legal theories weaken the distinctiveness of legal futurology, while technology-centric perspectives risk overlooking the normative values of law, such as justice and equality.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a critical examination of modern legal traditions is required, alongside efforts to form new legal concepts and principles and to redefine the normative direction of law. This paper proposes a normative legal futurology as a new avenue for legal futurology. Going beyond mere technological adaptation, normative legal futurology poses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nature of law and seeks to present the ideals law should pursue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Gender and Law, Ewha Womans University.

** Professor, School of Law, Ewha Womans University.

in future societies while outlining directions for new legal systems to embody those ideals. As such, normative legal futurology constitutes a philosophical theory of law and can be established as a philosophical approach to legal futurology.

Key words : futurology, legal futurology, future of law, law of the future, normative jurisprudence, normative legal futurology